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68호 2019. 5. 0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206호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207호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삼척시 조례 제1208호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삼척시 조례 제1209호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35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77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41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6호 삼척시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46
- 삼척시 고시 제47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①) 경미한 사항
변경고시 ----- 48
- 삼척시 고시 제48호 납세자 권리현장 ----- 50
- 삼척시 고시 제4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08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5
- 삼척시 공고 제413호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62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6호 도로의 지정·공고 ----- 63

공 람									
--------	--	--	--	--	--	--	--	--	--

제20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4. 9.)에서 의결된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4월 30일

삼척시 조례 제1206호 (의원 발의)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 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삼척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삼척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4. 9.)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4월 30일

삼척시 조례 제1207호(의원발의)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을 “삼척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 따라 처리”를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의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 부강”을 “외부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을 “별제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초과하여”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를 “초과사례금 신고는”으로, “하 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11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을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7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다 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전 이라도 위촉 해제”를 “전이라도 해촉”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3조의 제목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을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이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td> </tr> <tr> <td>소속위원회</td> <td></td> </tr> <tr> <td>연락처</td> <td></td> </tr> </table>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p>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p> <p>※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합계		명		금액	부담기관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출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활동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대표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서류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위원회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대표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방법 :	반환금액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연락처 직무관련 내용	주소 청구인과의 관계
기타 사항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지역구 선거구분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황	명칭 직위 보수	영리행위 기간 (택) 연월원 전화번호
기타	영리행위 장소 (주소)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OOO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p>신 고 자</p> <p>성명</p> <p>소속위원회(정당)</p> <p>연락처</p> <p>주소</p>		
<p>금품등을 제공한 자</p> <p>성명</p> <p>직업 (소속)</p> <p>연락처</p> <p>주소</p> <p>법안단체등의 경우</p> <p>명칭</p> <p>소재지</p> <p>대표자 성명</p>		
<p>신고취지 및 이유</p>		
<p>금품등 수수 내용</p> <p>일시</p> <p>장소</p> <p>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p>		
<p>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p> <p>반환여부</p> <p>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p>		
<p>증거자료</p>		
<p>비고</p>		
<p>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자 (서명 또는 인)</p>
<p>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p>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p>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p> <p>인도일 : 20 . . .</p> <p>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p>		

제20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4. 9.)에서 의결된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4월 30일

삼척시 조례 제1208호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사회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로부터”를 “재난피해자에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0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4. 9.)에서 의결된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4월 30일

삼척시 조례 제1209호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행정의 정책 및 사업에 성 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수립, 시행 및 평가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9조(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 시의원,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주체들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 인력의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정책 결정과정 여성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 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가. 약자의 보행 편의
-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 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라.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
- 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의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안전 확보

3. 주거단지

- 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강화)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 사업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 제17조(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른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주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0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
 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 제21조(임기 등)** 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22조(실비 지급)**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4월 30일

삼척시 규칙 제577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실을”을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공무원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8.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5조의6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서식에 따르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4조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통지”를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을 “수립하고, 매 년”으로, “교육을 하여야”를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4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삼척시 고시 제2019-46호

삼척시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삼척시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삼척시장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1.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가. 사업명 :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일반근린형)

나. 위치 : 삼척시 성내동 3-1번지 일원

다. 면적 : 149,319㎡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마.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바. 총사업비 : 142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57억원)

사. 사업내용

- 가로환경 특화, 지역자원의 명소화 사업
- 타워 주차장, 청년혁신(주민) 어울림 플랫폼, 스토리텔링공간 등 조성

2.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가. 사업명 : 천년(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중심시가지형)

나. 위치 : 삼척시 정하동 100번지 일원

다. 면적 : 212,580㎡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마.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바.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사. 사업내용 : 도시재생창조관, 아트전시놀이공간, 바이오 어울림플랫폼 구축 등

㉔ 단위사업 주요내용

1.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타	
마중물사업	어울림 플랫폼구축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24.68	14.81	9.87	-	-	-	'19~'22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어울림플랫폼 구축	25.53	15.13	10.40	-	-	-	'19~'22
	주거생활환경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31.12	18.67	12.45	-	-	-	'19~'22
		•주거공간 가로환경정비	16.91	10.15	6.76	-	-	-	'19~'22
	대학로 예술거리 조성	•지역자산 특화사업	12.52	7.51	5.01	-	-	-	'19~'22
		•문화예술 전시공간 조성사업	31.24	18.74	12.50	-	-	-	'19~'22
소 계			142.00	85.00	57.00				

2.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국비	지방비	부처협업		
마중물사업	소 계		25,000	15,000	10,000		
	문화예술공간	① SAM적!아트플레이캠프 조성	H/W	10,724	6,674	4,050	'19~'23
		② 과학예술 국제아트 심포지엄	S/W	600	360	240	'19~'23
		③ 종합상생플랫폼 구축	H/W	8,595	5,157	3,438	'19~'23
		④ 국내외 예술 마스터 클래스	S/W	200	120	80	'19~'23
		⑤ 예술인-지역민 문화강좌	S/W	40	24	16	'19~'23
		⑥ 현장지원센터 운영	S/W	400	-	400	'19~'23
	어울림공간	⑦ 바이오 어울림센터 조성	H/W	4,201	2,521	1,680	'19~'23
		⑧ 마을기업 육성지원	S/W	40	24	16	'19~'23
	홍보	⑨ 도시재생 창조관	H/W	200	120	80	'19~'23

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열람

- 가. 열람기간 : 2019. 5. 3. ~ 2019. 6. 5.
- 나. 열람장소 : 삼척시청 전략사업실
- 다.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㉖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전략사업실(033-570-4039, 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삼척시 고시 제2019-47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①)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2019. 3.15일자 고시(삼척시고시 제28호)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오분동 1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①)의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삼척시장

1. 계획취지: 지적측량 성과도 반영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면적 정정
2. 위치: 삼척시 오분동 132번지 일원
3. 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① 면적 정정 A=33,953㎡ → 34,171㎡(증 218㎡)
4.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①) 결정(변경) 조서: 첨부
5.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①)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변경 없음
6. 고시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①) 결정(변경) 조서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하수종말처리장	오분동 132번지 일원	33,953	증 218	34,171	1988. 7. 1. (건설부고시 제325호)	준공금지역, 최근고시 2019. 3.15.

■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종말처리장	• 면적조정 - A=33,953㎡ → 34,171㎡(증 218㎡)	경미한 사항(면적산정 착오 정정) 변경 : 지적측량 성과도 반영

삼척시 고시 제2019-48호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삼척시장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4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502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9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502	20190503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264-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63-15	20190503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어리 8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원동로 347-147	20190503		20090904	행정구역명칭 반영(역둔리+원동)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9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502	20190503	건물건축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264-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63-15	20190503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어리 8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원동로 347-147	20190503		20090904	행정구역명칭 반영(역둔리+원동)	

삼척시 공고 제2019-408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삼척시장

1.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중복수혜에 따른 제외조건 완화(조례 제2조제3항 개정)
 - 100만원 초과자 제외 → 200만원 초과자 제외
 - 200만원 이하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총 지급액에서 타 장학금 지원액의 차액분 지원 가능 단서조항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570-3314 / FAX : 033-570-3130
- 전자우편 : bluefishhl@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직전학년”을 “직전학년(학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 ①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학생은 <u>직전학년</u> 성적증명서 및 재학 증명서 각 1부	2. ----- <u>직전학년(학기)</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u> 규정에 의한 <u>선행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그 증명서류 1부</u>	<삭 제>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9-413호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삼 척 시 장

- 등 록 사 유 : 2019. 4. 30.민원실 통합인증기 교체
- 등록 연월일 : 2019. 4. 30.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 영	등록사유	비고
재등록 공인	교통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민원실 통합인증기	
폐기 공인	교통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교체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16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84-2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변경:2차)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84-2, 산110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40.2m, 너비 : 4.0m, 면적 : 165㎡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교가리	784-2	답	694	622	72	김**
근덕면 교가리	산110	임	2,751	2,658	93	김** 김** 김** 김**